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 2016~17 시민청 안내데스크 계약조건 심의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고
입찰 자격조건 등	임금체불, 우수인력관리 등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등록 사업자로 제한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안전사고 예방,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거리에 있는 수도권역으로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낙찰이 되었더라도 임금체불, 계약불이행 등 부정당한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확실히 하여 안내데스크 과업수행과 근로자 보호 및 교육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음	

2015. 12. 16.

심의위원 :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 2016~17 시민청 안내데스크용역 계약조건 심의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고
입찰 자격조건 등	서울 시민을 위한 시민청에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 안내데스크 용역을 선정하는것에 대해 동의하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자를 취득한 업체가 운영하는것에 동의함. 용역 업체의 현장관리를 위해 본사가 서울 내에 위치하는 것이 옳다고 봄.	

2015. 12. 16.


심의위원 :  (서명)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 2016~17 시민청 안내데스크용역 계약조건 심의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고
입찰 자격조건 등	<p>기존 안내데스크 운영에 시민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아 계속하여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p> <p>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만큼 제한경쟁입찰법으로 하는 것이 옳고, 관리를 위해 회사는 서울 및 경기도 권에 위치하고있는 곳이 옳다고 생각됨.</p> <p>인력파견의 업종인만큼 임금체불이력이 있는 업체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법이 필요함.</p>	

2015. 12. 16.

심의위원 : 이 나 미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 2016~17 시민청 안내데스크용역 계약조건 심의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고
입찰 자격조건 등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로 이루어지는 입찰법에 이 상이 없다고 판단되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의 참가를 동의합니다. 시민대상으로 운영되는 안내 서비스 인 만큼 전문적 인 운영과 책임을 위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15. 12. 16.

심의위원 : 김 래환 (서명)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 안 건 명 : 2016~17 시민청 안내데스크 계약조건 심의

검토분야	검 토 의 견	비고
입찰 자격조건 등	<p style="text-align: center;"> 본 과업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면허·등록(근로자 파견사업)을 필히 득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며, 충분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여야 경험을 토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됨 </p> <p> 서울시청과 거리가 먼 수도권외의 지역업체가 낙찰 될 경우 응급상황과 업무처리의 지연이 예상되어 수도권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됨 </p>	

2015. 12. 16.

심의위원 : 정 일 한 이영환